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. 7. 20 선고 2022가단1057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
말소등기절차 이행]

전 문

원 고 A (개명 전 성명: B)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변 론 종 결 2023. 6. 15.

판 결 선 고 2023. 7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순천시 I 전 1,729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1998. 10. 21. 접수 제54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순천시 I 전 1,729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는 원래 J의 소유였고, 원고와 피고들이 J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자 J은 1998. 10. 2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J, 근저당권자 원고와 피고들, 채권최고액 3,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고 한다).

나. J은 1998. 12. 24.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23년 넘게 경과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.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. 원고가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판단
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들의 J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할 것인데,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,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함께 소멸하였다.

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사건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석